

" 관인생략 "

서울특별시

인사 183.5- 7487

725-5463

'84. 8. 6

수신 수신처참조

제목 조례 개정 공포

1. 지방공무원법, 공무원 복무규정 및 직할시,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규정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관련사항과 형평을 유지하고 미비점을 보완할 별첨 개정조례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아래와 같이 공포되었으니 업무에 참고 할것.

가. 개정 주요골자

- 1) 공무원이 취임할때 소속 기관의 장 앞에서 복무선서를
하도록 규정 (제1조의 2)
- 2) 적극적인 근무기강확립을 위하여 공직자 행동률을 규정
(제2조의 2)
- 3) 공무원의 공사생활에서의 생활신조를 규정(제2조의 4)

나. 공포일자 : 1984.7.2 (조례 1897호)

첨부 :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 1부.

제	시설계장	경리처장	서부계장	서부과장	학	장
	김영환	변기				장

업무에 참고코자 합니다.

서울특별시 장



수신처 : 서과1-60, 서구1-17, 서사1-58, 서보1-17.

24 A		
2864	지	
	시	
	향	158 년 일 사기

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
=====

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-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조의2(선서) 공무원이 취임할때에 지방공무원법(이하 "법" 이하한다)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하는 선서는 "별표2"의 선서문에 의한다.

- 제2조의2를 제2조의2 제1항으로 하고,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공무원은 "별표3"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.

- 제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조의4(근검, 절약) ① 공무원은 화목, 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.

② 공무원은 소박하고,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.

- 제3조중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당직근무자는 근무장소를 무단히 이탈하지 못하며,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
-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3(겸임근무) ①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.

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.

- ② 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근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

부

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(별표 2)

선 서 문

선 서

본인은 공직자로서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
신명을 바칠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.

- 1. 본인은 법령을 준수하고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한다.
- 1. 본인은 국민의 편에 서서 정직과 성실로 직무에 전념한다.
- 1. 본인은 창의적인 노력과 능동적인 자세로 소임을 완수한다.
- 1. 본인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라도 직무상 알게된 기밀을
절대로 누설하지 아니한다.
- 1. 본인은 정의의 실천자로서 부정의 발본에 앞장선다.

(별표 3)

공 직 자 의 행 동 룰

대 민 관 제	대 내 관 제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언어는 부드럽게 한다. ○ 항상 웃으며 차별없이 대한다. ○ 전화는 적장과 이름을 먼저 밝히고 공손히 받는다. ○ 품의는 공손하게, 안내는 친절히 한다. ○ 민원은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한다. ○ 민원은 신속공정하게 경제 부담 없도록 처리한다. ○ 주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도록 처신한다. ○ 찾아오는 주민은 우선적으로 맞이한다. ○ 어렵고 불우한 주민의 편에서 일한다. ○ 반상회와 새마을운동에 앞장서 참여한다.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시간을 엄수한다. ○ 어려운 동료들 돕는다. ○ 근검, 절약한다. ○ 남에게 겸손한다. ○ 협조는 적극적으로 한다. ○ 상사를 존경하고 부하를 아낀다. ○ 직장환경을 명량하게 한다. ○ 복장과 용모는 단정히 한다. ○ 책을 읽고 인격도야에 힘쓴다. ○ 남의 의견을 존중한다.
<p>국무총리의 승인불 얻은 서울특별시 아동위원회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984. 7. 2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장 염보현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조례제 1898호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아동위원회에 관한 조례개정조례</p>	<p>서울특별시 아동위원회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제 1 조 (목적)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 7 조 및 동법시행령 제 4 조에 규정한 서울특별시 (이하 "시"라 한다) 아동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 2 조 (정원) 아동위원의 정수는 각 동에 2 명으로 한다.</p>

" 관인 생략 "

서 울 특 별 시

인사 200 - 224 521 1984. 8. 17.

수신 수신처 참조

제목 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 기준 시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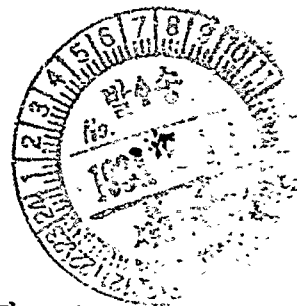
1. 인거 200 - 2900 (84.7.27)호와 관련임.

2. 별정직공무원중 전산업무 담당 국가직 임용기준이 총무처 예규 제163호 (84.7.27)로 지정 시행됨에 따른 당시 소속 같은분야의 지방별정직 임용기준을 통 예규에서 정한 자격기준에 의거 준용토록 이첩 시달하니 해당분야 별정직 관공부시에서는 이점 착오없기 바람.

첨부 총무처 예규 제163호 (관보 9804호 84.7.28.참조 첨부물 생략). 끝.

계	시설계장	경리계장	사무계장	사무과장	학 장

서 울 특 별 시 장



서 울 시 인 사 200 - 224 521 서기 1, 서단 1,서관 1-2, 서국 1-10, 서과 1-60,

인사	224 521	서기 1-17, 서사 1-53, 서보 1-17
공문	276P	
기타		
첨부물		
기타		158